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연월일	2015. 5. .
발 의 자	윤영철 의원 외 8명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영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5.

발 의 자 : 윤영철, 권기만, 김복자
안장환, 안주찬, 양진오
정근수, 정하영, 한성희

1. 제안이유

시정질문 운영 방식에 있어 보충질문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질문 시간을 조정하여 1문 1답 시정질문 방식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정질문 시간(답변포함) 조정(안 제72조의2제2항)
 -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
-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자의 범위 단서규정 신설(안 제72조의2제2항)
 -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71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제2항 중 “시정질문은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이” 를 “**시정질문은**” 으로,
“30분”을 “**40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 (생략) ② <u>시정질문은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없이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u> ③ (생략)	제72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정질문은 -----</u> ----- ----- <u>40분-</u> ----- <u>다만, 보충질문은 시정</u> <u>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